

PATENT ASSIGNMENT COVER SHEET

Electronic Version v1.1
 Stylesheet Version v1.2

EPAS ID: PAT7009457

SUBMISSION TYPE:	NEW ASSIGNMENT	
NATURE OF CONVEYANCE:	CHANGE OF NAME	
CONVEYING PARTY DATA		
	Name	Execution Date
	PURR SONG WRITER INC	07/23/2021
RECEIVING PARTY DATA		
Name:	PURRSONG, INC.	
Street Address:	(GUNG-DONG, D-BRIDGE), COWORKING SPACE, 1F, D2-DONG, 179, DAEHAK-RO, YUSEONG-GU	
City:	DAEJEON	
State/Country:	KOREA, REPUBLIC OF	
Postal Code:	34138	
PROPERTY NUMBERS Total: 1		
	Property Type	Number
	Application Number:	16851600
CORRESPONDENCE DATA		
Fax Number:	(513)977-8141	
<i>Correspondence will be sent to the e-mail address first;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 using a fax number, if provided;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 via US Mail.</i>		
Phone:	5139778200	
Email:	sarah.petit@dinsmore.com	
Correspondent Name:	DINSMORE & SHOHL LLP	
Address Line 1:	255 EAST FIFTH STREET SUITE 1900	
Address Line 4:	CINCINNATI, OHIO 45202	
ATTORNEY DOCKET NUMBER:	126523-1 (OP20200080US)	
NAME OF SUBMITTER:	YONGSOK CHOI	
SIGNATURE:	/Yongsok Choi/	
DATE SIGNED:	11/05/2021	
Total Attachments: 19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1.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2.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3.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4.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5.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6.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7.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8.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9.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10.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11.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12.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13.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14.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15.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16.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17.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18.tif
source=PurrSong, Inc._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er and Eng translation#page19.tif

Certificate of All Registered Matters (Including Erased Matters)
[For Submission]

Register No.	053152	
Registration No.	160111-0449135	
Corporate name	PURR SONG WRITER INC	.
		.
PurrSong inc.		2021.03.25 Changed
		2021.04.12 Registered
PurrSong, Inc.		2021.07.12 Changed
		2021.07.23 Registered
Head Office	(Doryong-dong), 3F, 538, Daedeok-daero, Yuseong-gu, Daejeon	.
		.
(Gung-dong, D-BRIDGE), Coworking space, 1F, D2-dong, 157, Daehak-ro, Yuseong-gu, Daejeon		2021.02.03 Changed
		2021.02.09 Registered
(Gung-dong, D-BRIDGE), Coworking space, 1F, D2-dong, 179, Daehak-ro, Yuseong-gu, Daejeon		2021.09.03 Changed
		2021.09.16 Registered

- Omitted -

- 1/17 -

- Omitted -

- 2/17 -

- Omitted -

- 3/17 -

- Omitted -

- 4/17 -

- Omitted -

- 5/17 -

- Omitted -

- 6/17 -

- Omitted -

- 7/17 -

- Omitted -

- 8/17 -

- Omitted -

- 9/17 -

- Omitted -

- 10/17 -

- Omitted -

- 11/17 -

- Omitted -

- 12/17 -

- Omitted -

- 13/17 -

- Omitted -

- 14/17 -

- Omitted -

- 15/17 -

- Omitted -

- 16/17 -

PATENT

REEL: 058038 FRAME: 0003

- Omitted -

Competent Registry: Registry of Daejeon District Court / Registry of Issuance: Central Office of Regist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Ministry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Fee 1,000 Won receive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is true and correct to the details of registration.

[However, the registered matters not applied for were omitted.]

November 2, 2021

Central Management Office of Registration Information, Ministry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Data Operating Manager

//Official Seal Attached//

*The deletion line means the erased registered matters.

*This certificated may be printed in color or black.

[Internet Issue] It can be confirmed whether it is forgery or falsification through the barcode below with scanner or the
issuance confirmation no. in the issuance confirmation menu on the internet registry (<http://www.iros.go.kr>). It is possible to
check out the document through the issuance confirmation no. until three months for five times after the day of issuance.

Issuance No. 11303050179100200211101220022511032510518131609651 1 Issuance Confirmation No. 1524-AAVP-QUOW

Issuance Date: 2021/11/02

- 17/17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053152	
등록번호	160111-0449135	
상 호	주식회사 풀송(주)	
	주식회사 풀송 (PurrSong-inc.)	2021.03.25 변경 2021.04.12 등기
	주식회사 풀송 (PurrSong, Inc.)	2021.07.12 변경 2021.07.23 등기
본 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38, 3층(도룡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57, 디2동 1층 공유오피스(궁동, 디-브리지 +)	2021.02.03 변경 2021.02.09 등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79, 디2동 1층 공유오피스(궁동, 디-브리지)	2021.09.03 변경 2021.09.16 등기
공고방법	대전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대전일보에 게재한다.	
1주의 금액	금 5,0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10,204 주	금 51,020,000 원
보통주식	8,128 주	
재1종전환우선주식	1,231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845 주	
발행주식의 총수	11,469 주	금 57,345,000 원
보통주식	9,393 주	
재1종전환우선주식	1,231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845 주	
발행주식의 총수	11,756 주	금 58,780,000 원
보통주식	9,680 주	
재1종전환우선주식	1,231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845 주	
발행주식의 총수	12,327 주	2021.03.31 변경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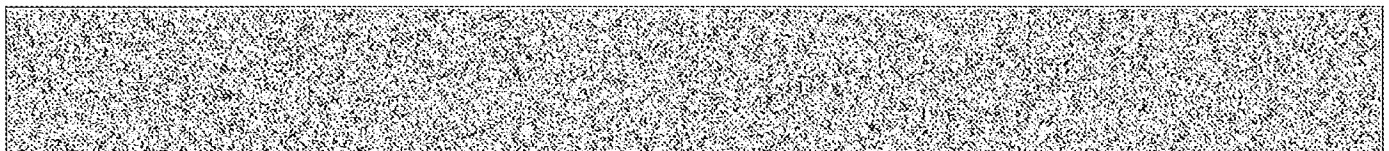
발행번호 11303050179100200211101220022511032510518131609651 1

발급확인번호 1524-AAPV-QUOW

발행일: 2021/11/02

등기번호	053152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보통주식	9,680 주	금 61,635,000 원	2021.04.12 등기
제1종 전환우선주식	1,231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84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71 주		
발행주식의 총수	12,897 주		
보통주식	9,680 주	금 64,485,000 원	2021.04.02 변경
제1종 전환우선주식	1,231 주		2021.04.12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84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141 주		
발행주식의 총수	13,126 주		
보통주식	9,680 주	금 65,630,000 원	2021.04.10 변경 2021.04.12 등기
제1종 전환우선주식	1,231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84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37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3,468 주		
보통주식	9,680 주	금 67,340,000 원	2021.07.13 변경 2021.07.23 등기
제1종 전환우선주식	1,231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84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370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342 주		
발행주식의 총수	13,492 주	금 67,460,000 원	2021.07.16 변경 2021.07.23 등기
보통주식	9,704 주		
제1종 전환우선주식	1,231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84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370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342 주	금 69,030,000 원	2021.09.09 변경 2021.09.1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3,806 주		
보통주식	10,018 주		
제1종 전환우선주식	1,231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84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370 주	금 71,880,000 원	2021.10.21 변경 2021.10.27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342 주		
발행주식의 총수	14,376 주		
보통주식	10,018 주		
제1종 전환우선주식	1,231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84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370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912 주		



등기번호	053152
------	--------

목	적
1. 고양이용 로봇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업	
1. 고양이 관련용품 유통업	
1. 문구, 팬시용품 제조업	
1. 전자상거래	
1. 각호에 관련된 도, 소매업	
1. 각호에 관련된 수입수출업	
1.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노태구 870805-*****			
2017 년 02 월 21 일 취임	2017 년 02 월 21 일	등기	
2020 년 03 월 25 일 중임	2020 년 05 월 25 일	등기	
감사 이용재 840804-*****			
2017 년 02 월 21 일 취임	2017 년 02 월 21 일	등기	
2020 년 03 월 25 일 퇴임	2020 년 05 월 25 일	등기	
대표이사 노태구 87080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자천로32번길 20, 161동 703호(화서동, 꽃피버들마을엘지아파트)			
2017 년 02 월 21 일 취임	2017 년 02 월 21 일	등기	
2020 년 03 월 25 일 중임	2020 년 05 월 25 일	등기	
사내이사 김현 890205-*****			
2019 년 08 월 22 일 취임	2019 년 09 월 03 일	등기	
2020 년 03 월 25 일 사임	2020 년 05 월 25 일	등기	
사내이사 김현 890205-*****			
2020 년 03 월 25 일 취임	2020 년 05 월 25 일	등기	
2021 년 07 월 12 일 사임	2021 년 07 월 23 일	등기	
사내이사 박창현 880528-*****			
2021 년 07 월 12 일 취임	2021 년 07 월 23 일	등기	
사내이사 김종번 851212-*****			
2021 년 07 월 12 일 취임	2021 년 07 월 23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송진호 670722-*****			
2021 년 07 월 12 일 취임	2021 년 07 월 23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정지혜 870410-*****			
2021 년 07 월 12 일 취임	2021 년 07 월 23 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제1종 전환우선주식
본건 우선주식의 내용
1. 주식의 개요
가. 본 건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주식이고, 전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나.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 회사의 정관변경, 종류주식 발행사항의 결정, 주식교환, 주식이전, 분할, 합병 등으로 본 건 우선주식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전체 주주총회의 결의와 별도로 해당 안건



등기번호	053152
------	--------

에 대하여 본 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라. 본 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2028년 7월 30일)까지로 하며,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미지급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우선주로 존속한다.

2. 배당에 관한 사항

본 건 우선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회사가 배당을 실시할 경우, 본 건 우선주의 1주당 우선배당률: 액면가액의 0.0%

나.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참가 여부: 참가함

다. 실제 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달할 경우, 후년도의 누적 여부: 누적

라. 우선주에 대한 초년도 배당기산일: 직전연도 말일에 주주가 된 것으로 간주

3.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에 관한 사항

회사가 청산 또는 청산유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의 잔여재산(청산배당을 위한 잔여재산 외에도 아래 청산유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자산의 처분대가, 인수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의 대가로 교부되는 현금 또는 주식의 가액 등을 통칭함)을 분배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 본건 우선주식 각 1주에 대하여 (i) 본건 주식인수가격 및 (ii) 청산 이전까지 발생한 1주당 미지급 배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분배한다.

나. 그 후 남은 재산은 본건 우선주식 주주와 보통주식 주주에 대하여 함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이 경우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하였을 경우 전환되는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청산 외에 다음 각호의 경우(이하 "청산유사사유"라 한다)도 청산 사유로 간주한다.

(i) 회사가 합병, 주식교환,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가 발생하고, 거래 후 주요주주의 지분을 합계가 50%를 하회하거나 제3자가 사실상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ii)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을 양도, 소멸, 기타 처분하는 경우

(iii) 신주(주식연계증권을 포함)의 발행 또는 기존 구주의 양수도 등에 의하여 주요주주의 지분을 합계가 50%를 하회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제3자가 사실상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라. 잔여재산 분배 방법은 회사의 청산시에는 청산배당금을 자동교부하거나, 청산유사사유의 경우에는 본 건 우선주에 대한 차등가액 매매나 차등 유상감자 등의 방법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청산유사사유 발생시 투자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전환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우선주의 존속기간 내에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가. 전환대상 주식은 회사 발행 보통주이며, 전환된 보통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식 인수가격을 전환 당시 유효한 전환가액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이다.

다. 최초의 전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 인수가격으로 하여 최초의 전환비율은 1로서 본건 우선주식 1주당 전환대상 주식 1주로 전환한다.

라.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

등기번호	053152
------	--------

)를 발행(사후적으로 발행 또는 전환가격이 투자자의 전환가격보다 하향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 유상증자는 본 항의 전환가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회사가 타사와의 합병(영업양수도, 주식교환, 제3자의 지분취득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을 포함)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회사 주식의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평가가액의 70%으로 조정한다.

바.회사가 상장(상장법인과의 합병하는 방법 포함)하는 경우, 공모가격이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해당 공모가격의 70%로 조정한다.

사.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5.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로 인하여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과 동일한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을 그 비율에 따라 무상지급 받는다.

6.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에 본건 우선주식의 내용보다 유리한 내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본건 우선주식의 내용을 해당 주식과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상환전환우선주식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전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등기번호	053152
------	--------

①회사에 청산사유 또는 (i)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i)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을 양도 기타 처분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 (iii) 신주(주식연계증권을 포함)의 발행 또는 기존 구주의 양수도에 의하여 해당 주식의 인수인이 그 거래를 통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의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취득·보유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청산 유사 사유”), 투자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먼저,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주당 발행가액과 발행일로부터 분배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다만,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주식의 분할 내지 병합 등을 포함하여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 이전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2. 만일 잔여재산이 제1호의 합산금액을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3. 만일 제1호에 따른 분배 후 잔여 재산이 남는 경우 그 나머지 재산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각 주주의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하며, 이 경우 우선주주는 보통주로 전환하였을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최대 수량의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가 매각 등으로 금전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취득할 경우 그 가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투자자가 공정가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투자자가 국내 회계법인 또는 국내 4대 감정평가법인 중 승인한 두 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을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전환기간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존속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은 투자자가 전항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당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등기번호	053152
------	--------

전환가격 조정에 따라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본건 우선주식의 주당발행가액/전환가격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_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5.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전환가격은 “본건 종류주식 인수가격(또는 직전 전환가격)” 과 “투자기업의 주당 합병가액의[70%]” 중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④미발행 수권주식의 유효: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효한다.

⑤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투자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상환 재원을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1주당 상환가격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④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기번호	053152
------	--------

에는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함께 제1항의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상환전환우선주식

1. 우선주의 성격

- ① 우선주는 배당 및 잔여 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주식이다.
- ②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2. 배당에 관한 사항

- ①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배당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 ③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한 때의 직전 사업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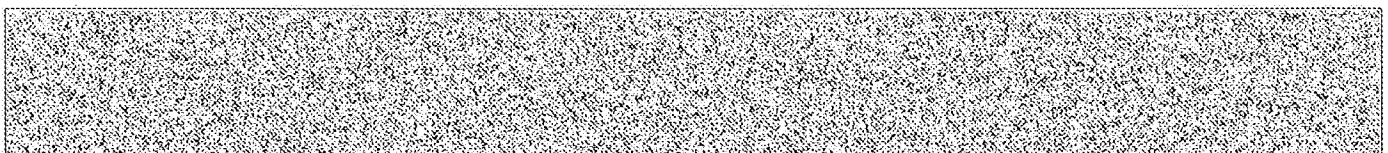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우선주의 주주는 우선주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연복리 [0]%의 이율에 의한 금원,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까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청구권을 가진다. 다만, 액면가에 대한 청산금의 비율이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우선주의 주주는 그 차이에 상응하여 추가적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우선주 주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5. 상환에 관한 사항

- ① 상환청구기간: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이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 청구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상환금액: 우선주의 인수가액과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6]%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단, 기지급된 배당금은 공제한다.
- ③ 상환방법: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 ④ 상환하는 주식의 수: 우선주주가 정하는 수량으로 한다.



등기번호	053152
------	--------

6.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우선주의 발행일 익일부터 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의한 전환청구에 의해 보통주로 전환된다.

② 전환비율: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③ 전환비율의 조정:

가.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다호 내지 사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다.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라. 본건 우선주의 발행 이후 주식매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우선주의 주주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라.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마.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평가가액으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바.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사.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아. 다만, 피투자기업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요청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전환가격의 10%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7. 기타 세부사항은 우선주주와 체결할 우선주인수계약서에 의한다.

2021 년 03 월 31 일 설정

2021 년 04 월 12 일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등기번호	053152
------	--------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전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③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 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⑤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법 제 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로 자동전환된다.

②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

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 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4호 내지 9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4.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5.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매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평가가액으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8.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9.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10. 피투자기업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요청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전환가격의 10% 할인을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예비상장심사 전 전환청구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등기번호	053152
------	--------

④미발행 수권주식의 유효: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효한다.

⑤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③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④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⑤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상환권(기한 전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2조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지 아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전항의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이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등기번호	053152
------	--------

못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연복리 15%를 가산한 금액과 실제 상환한 금액과의 차액을 투자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위약금 및 본 계약에 기한 회사의 지급의무 있는 모든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 우선주식을 회사에게 반환한다.

④이해관계인은 회사와 연대하여 본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21년 07월 13일 설정 2021년 07월 23일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 ③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④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 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경합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법 제 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등기번호	053152
------	--------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로 자동전환된다.

②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③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합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1.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이하 전환비율이라 함은 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수를 말한다.)

2.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4호 내지 9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4.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5.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등기번호	053152
------	--------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6.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평가가액으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8.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9.본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10.폐투자기업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요청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전환가격의 10%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예비상장심사 전 전환청구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③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④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⑤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상환권(기한 전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2조 2항

등기번호	053152
------	--------

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전항의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이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연복리 15%를 가산한 금액과 실제 상환한 금액과의 차액을 투자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위약금 및 본 계약에 기한 회사의 지급의무 있는 모든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 우선주식을 회사에게 반환한다.

④이해관계인은 회사와 연대하여 본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21년 10월 21일 설정 2021년 10월 27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등기번호	053152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0 년 03 월 25 일 설정 2020 년 05 월 25 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17 년 02 월 21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2019년 10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4층 408-2호(이의동, 에이스광고 타워1)으로부터 본점이전 2019 년 10 월 30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1년 11월 02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 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303050179100200211101220022511032510518131609651 1

발급확인번호 1524-AAPV-QUOW

발행일: 2021/11/02